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8
----------	-----

2024. 4. 30.(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신부 산후조리비·교통비·태교 지원(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개정안은 임신부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임신부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안 제11조제1항제1호),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안 제11조제1항제2호)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임산부 지원) ① 도지사는 임신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 임신부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u>하는 교통비 지원</u></p> <p>3. <u>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u></p> <p>② <u>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시사가 정한다.</u></p>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충청북도 출생등록 인구수는 7,693명으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8년 10,84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은 임신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018~2023년 충청북도 출생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남자인구수	여자인구수
2023년	7,693	3,962	3,731
2022년	7,576	3,871	3,705
2021년	8,330	4,206	4,124
2020년	8,748	4,479	4,269
2019년	9,362	4,875	4,487
2018년	10,843	5,551	5,292

- 현재 집행기관은 안 제11조제1항의 각 호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태교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교통비, 태교 지원 등의 방법으로 예우하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임산부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임산부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 임산부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3.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1조(임산부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 임산부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u> <u>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u> <u>3.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u> <p><u>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u></p>

관련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안 제11조(임산부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산후조리비 지원 : 3,750백만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475백만원
 - 태교 지원 : 140백만원
- 추계 결과 : 연간 4,365백만원,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21,825백만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소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3개)	21,825	4,365	4,365	4,365	4,365	4,365
산후조리비	18,750	3,750	3,750	3,750	3,750	3,750
(도 비)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시군비)	11,250	2,250	2,250	2,250	2,250	2,250
임산부 교통비	2,375	475	475	475	475	475
(도 비)	715	143	143	143	143	143
(시군비)	1,660	332	332	332	332	332
태교 지원	700	140	140	140	140	140
(도 비)	280	56	56	56	56	56
(시군비)	420	84	84	84	84	84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